

의안번호	2217861
의 퇴 인	진종오 의원
회 답 일	2026.4.23.
추계번호	26F1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경기부 법인세 과세특례 기간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현행) 경기부 설치 당해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3년간) → (개정안) 경기부 설치 당해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5년간)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 제104조의22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대회참가비·훈련장비구입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인세 공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당해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3년간**)→ (개정안) 경기부 설치 당해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5년간**)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의 감소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중

목의 경기대회 운영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이스포츠경기부 법인세 공제액 등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¹⁾에 따라 운동경기부·장애인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등 모든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실적으로, 국세청 확인 결과 감면대상별로 해당 감면실적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 세액공제신청서에서 운동경기부·장애인운동경기부·이스포츠운동경기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스포츠경기부에 따른 공제세액만을 별도 구분할 수 없음
 - (운동경기부) 3년간 운영비 중 특정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장애인운동경기부) 5년간 운영비 중 특정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에 근거한 법인세 감면실적

(단위: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기업 수	4	6
공제금액	2.7	4.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